2022년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6. 9.(목),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0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72건(안건번호 제2022-56105호~5737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6105호는 블로그에 영상저작물을 직접 번역·더빙하여 제공한 게시물 1건으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개입보다는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56106호~5734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는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불법복제물 총 37건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0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2-56105호~5737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610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더빙 영상물을 게시한 1건임.
  (안건번호 제2022-5610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에서 독점 제공 중인 애니메이션 '◉◉ ◉◉ ◉ ◉ ◉'의 에피소드 하나를 더빙한 영상물임. 성우지망생들이 스터디를

하며 연습용으로 더빙한 게시물로 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게시물을 보면 영상물 아래에 '□□□□ □□ □□□□ □□ □□□ □□□□ □□□ □□□□□□□ □□□□□□□'고 양해를 구하고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음. 스터디 및 더빙연습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시연 자료를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시다시피 다른 게시물들도 스터디 및 더빙연습 목적으로 올라와 있음. 전문 성우가 아닌 성우지망생들이 연습을 목적으로 더빙한 것으로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 또한 광고 게재 등 저작물 게시를 통한 영리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음.

- B 위원: 기존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사례 설명을 부탁함.

- 오진해 전문위원: 기존에도 외국 영상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소위 '팬 더빙'을 한 사안이 심의에 몇 차례 상정되었음. 본 사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됨.

번역 및 더빙의 2차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영리 목적이 없는 점, 본인들의 능력 함양 또는 재미 목적으로 더빙한 점 등을 공통적으로 고려하였음. 또한 그러한 팬 더빙이 품질 면에서도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명확 한 점, 이러한 성격의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해 이제까지 시정권고를 부결해 왔음.

- B 위원: 2018년에 1건, 작년에 3건 가량 심의한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블로그의 해당 게시판에, 본인들이 더빙 작업한 ♣♣♣ 영상들을 쭉 업로드 했다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본인이 직접 한국어 더빙한 다른 저작물의 작업물들을 올려놓고 있음.

- C 위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자 입장에서는 성우 능력 함양 및 일종의 포트폴리오로써 기록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임. 이러한 더빙 사안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팬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도 함. 다만 권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다면 삭제될 여지는 있음.

- E 위원: '팬 더빙'의 사안에서도 공정이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C, D 위원: 동호회(스터디) 비슷한 활동 같음. 해당 게시물의 더빙 참여 인원도 5명 이내로 소수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5610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610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개입보다는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56106호~5734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출판, 만화 등을 블로그, 카페,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중점](영화)마녀 (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6136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마녀 (2018)'를 160포인

트에 판매 중임. 2018. 6. 27. 개봉한 한국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1,300원에 서비스 중임.

(영화 '[중점](영화)탑건: 매버릭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6756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탑건: 매버릭 (2021)'를 16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2. 6. 22. 개봉 예정인 미국 영화로 국내 개봉 예정임.

(출판 '(출판)두 번째 커밍아웃 (출판:알에스미디어,시리즈,카카오페이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7074호는 웹하드에서 '(출판)두 번째 커밍아웃 (출판:알에스미디어,시리즈,카카오페이지)'를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1. 1. 1. 출판된 웹소설로 예스24에서 eBook을 4,000원에 판매 중임.

(프로그램 '[중점](SW)스케치업 프로 SketchUp Pro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7113호는 웹하드에서 '[중점](SW)스케치업 프로 SketchUp Pro 2021'를 30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0. 11. 19. 출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에서 39만원에 판매 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56106호~573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2-56106호~5734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게임, 프로그램,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6106호~573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는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심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 ◇◇◇'임. 안건수 29개, 총 게시물수 37개가 금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신속심의 요청되었음.
  (안건번호 제2022-5734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웹하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의 37개 신속심의 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의 신속 심의 대상을 확인 후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56105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56106호~5734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57348호~5737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1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